

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635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6350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가단31194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명헌 담당변호사 한창희

피고, 항소인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차민혁

변론 종결2023. 5. 12.

판결 선고2023. 6. 16.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가단3119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4 내지 12호증) 그리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희

판사정성호

판사최지영